

현행 저작권법에 복사기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지난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 주최로 열린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국광학기기협회 홍계인 전무의 토론 내용을 듣는다-

취재 : 연정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홍)에서는 지난 12월1일, 한국학술진흥재단 5층 강당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통해,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 활성적인 저작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건전하고 공정한 출판과 발행 및 배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정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김정홍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영미식 수의계약제도(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정상조 교수) △저작권법 개정안에 있어서의 시적복제보상금(서울대학교 황적인 명예교수) △늘어나는 불법복제(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청광 부회장)가 발표되었다.

이상의 주제 발표에 이어 △임원선 사무관(문화체육부 저작권과) △장완익 변호사 △김석완 지도위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계인 전무(한국광학기기협회) △박재린 진홍이사(한국전자공업진흥회) △오상두 회장(대한복사문화협회)이 토론에 나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광학기기협회 홍계인 전무가 발표한 '현행 저작권법에 복사기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 관련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1. 개 요

현행 저작권 법에서 복사기 등 사적복제 보상금 관련사항을 보면 저작자는 법에서 정한 저작인격권이나 재산권을 갖고 재산권 행사나 양도는 물론 공탁제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

을 시에는 그 정지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법을 어긴자에게 합당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등 홀륭한 법률이라 사료됩니다.

저작권법의 개정제안(황적인 교수)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개정제안(황정인 교수)의 주요 핵심 내용

신설 조항	주요 내용
제2조20호	“보상금 : 저작물의 이용대가로서의 보상금은 저작권 사용료를 말한다”로 정의
제27조 1의 2항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금(부과금) 대상품목을 기기 : 복사기, 디지털방식의 녹음기 · 녹화기 기재 : 복사지, 녹음테이프 · 녹화테이프를 포함해 총 6개 품목
제27조 2의 2항	부과금 지급의무자(보상금 지불대상)는 기기 및 기재 제작자 또는 수입자로 한다.
제27조 2의 3항	복사기는 교육시설, 연구시설, 도서관 및 기업체 등 운영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운영자 부과금)

1) 여기서 우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제1의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정인 교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20호의 보상금 개념 정의와 제27조 1의 2항에서 사적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문제는 제27조 2의 2항에서는 부과금(보상금) 지급 의무자는 생산자와 수입자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 보상금은 저작권자와 선량한 사적 이용 자간에 발생하는 대가로 분명히 규정하면서 저작권 사용자가 아닌 생산자 또는 복제기기 · 기재에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뿐 아니라 앞뒤가 안맞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만의

하나 이 제도가 채택된다 하여도 추후 법해석상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조세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2) 부과금 대상품목을 종전 5개에서 복사지가 추가되어 6개로 규정했는데 원천적인 모순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동일하고 특히 복사용지에 관해서는 더욱이 혼란이 야기 됩니다. 즉, 5개 품목은 타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대상이나 복사에 사용되는 종이는 최근 복사기술의 발달로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할뿐 아니라 소위 복사 전문용지라는 개념이 성립되지도 않게 되어 복사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사무용지나 프린터 등에서도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 제기의 소지가 많습니다.

3) 법 제27조 2의 3항에서는 교육시설, 연구시설, 도서관 및 기업체 등 복사기를 유상으로 조작, 관리하는 경우 운영자에 부과금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협행법에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서 중복성이 있는데 이 규정 보다는 정상조 교수의 개정안 제27조 2항 즉, ‘저작물의 절반 이상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사적 이용자에게 분명한 개념을 주지시키고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 국내 광학 및 복사기 산업동향

(가) 정책 및 국내산업

○ 정부에서는 광학산업을 비롯해 항공기, 반도체, 컴퓨터 등 10대 산업을 첨

R&D 매출액 비율('93)

(단위 : %)

전 산업	자동차	광학기기
2.28	3.13	3.71

자료 : 산업은행('95) 「산업편람」

단기술산업으로 확정하여 2000년대 선진국 산업화를 목표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산업발전 및 수출성장을 주도할 주요 산업으로 집중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학산업의 범위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복사기 메이커는 지난해 까지 6개사였으나, 최근 1개사의 부도발생으로 현재는 5개사로 감소했습니다.

○ 국내복사기 메이커들은 모두가 일본의 기술제휴 내지는 합작회사 형태로 아직 자립기반이 없을뿐 아니라 막대한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술기반뿐 아니라 주요 부품 및 설비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대일 무역역조 개선 및 국산화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해외

○ 일본을 중심으로한 복사기 생산 선진국은 자국내 고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특히 등의 보호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중·저급품들은 동남아 등 지역별 투자환경에 따른 생산거점을 국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에는 극히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인 상태입니다.

○ 최근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아나로그 흑백 복사기에서 디지털화, 컬러화, 복합화 등으로 급속히 진행되며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 투자

○ 복사기 산업은 연구개발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일본의 경우 기술개발(R&D) 투자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기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정부 및 업계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개발투자를 전제로 할 때 즉,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비로 20%를 시설투자를 할 경우 2005년에 가서 약 일본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며 국제시장에서 겨우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라) 복사기 업계에 사적복제 보상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부담뿐만 아니라 동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가 보상금 규모를 상회할 우려도 있습니다.

2. 현행 저작권법에 복사기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

- 1) 저작권 단체가 사적 이용자에게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기에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저작된 단체가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고 생산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봅니다.
따라서 저작권단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응한 노력과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 특히 복사기의 가정 보급율은 1% 미만 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적복사 실태조사 및 소비자 조사(Field Survey, Questionnaire 등)를 수차례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외국의 경우처럼 이해 당사자(기기매이커는 이해 당사자가 아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사례별로 포괄적 이용허락 제도, 개별 이용허락제도 등의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2) 모든 복사기 구입자에게 저작권의 불법복사를 전제로 한 보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가해자로 몰아버리는 극히 위험천만한 착상이며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어디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복제기기 등에 보상금 부과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것 자체가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나 물가는 사용료와는 별도의 것입니다.
- 복사기의 편리성 등에 대한 혜택을 받는 저작권자가 메이커에게 그 잇점을 되돌려 주지 않는 바와 같이 복제기기의 저작권 침해는 원인 발생자에게 한해 권리가 부과해야 합니다.
- 3) 보상금이 내수용에만 부과되어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상금 징수에 따른 사무행정, 사후관리 등으로 인적·시간적인 증가가 필수적으로 뒤따르므로 이는 그만큼 회사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뿐



▲ 지난 12월1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주최로 열린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국광학기기협회 홍계인 전무는 토론자로 나서 '현행 저작권법에 복사기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아니라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도 위배 됩니다.(전세계 국가의 1~2국가만 제외)
 ○결국 복사기 수출국은 거의 대부분 동남 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반대로 한국의 수입기기에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4) 물론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발전과 지식·정보 등 창조활동에 기여하는 학술, 문예인들의 권리와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체부 예산이 지극히 낮아 인문사회 및 문화발전 연구에 대한 투자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은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뒷받침 해야 할 일이지 사적복제 보상금의 일부(20%)로 충당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거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면으로 개인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취지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중에는

- 주택복권
- 기술복권
- 체육복권(국민체육진흥기금에 쓰임)
- 자치복권
- 기업복권
- 복지복권
- 관광복권 등 7종이 있습니다.

물론 복권발행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하면 정부예산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공익분야에 실제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체육복권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쓰이고 있는데 발행 당시 문화부와 체육부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문체부가 통합부처이고 저작권협의회가 문체부 소관 사항일 테니 기존의 체육복권을 확대 조정하여 예를 들면, 문화·체육복권을 발행하여 하드웨어인 국민 체육진흥과 소프트웨어인 문예, 학술 진흥에 함께 쓰이는 기금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도 이상과 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재검토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